



병가휴직 규정

규정번호	2-1-7
제정일자	2010.03.01.
개정일자	2019.12.18.
책임부서/팀·계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직원 중에서 중증질환 등 또는 중대한 질병 및 부상으로 현 직무를 일정 기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교직원에 대하여 학교법인 순효학원 정관 제43조 제1호,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<2019.12.18. 개정>

제2조(대상) 이 규정은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병가휴직 급여 및 기간) ① 총장은 교직원이 중증질환 등 또는 중대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장 6개월 범위 안에서 월 보수액의 70%를 지급 할 수 있다. 단, 6개월 이후에는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② 병가 휴직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단,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·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세부사항 및 준용) ① 이 규정 외의 휴직은 본 대학의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